

# 2021년 마암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행정업무에 기여하고자 본 감사를 실시하였음.

## I | 감사개요

- 감사기간:** 2021. 11. 9.[화] ~ 11. 11.[목], 3일간
- 감사범위:** 2019. 11월 ~ 2021. 11월 감사일까지 면정업무 전반
- 감사방법:** 서류 및 현장확인 병행
- 감사인원:** 감사담당(반장) 외 4명
- 주요 감사내용**

- 각종 주요시책, 지시사항 이행여부
- 예산회계분야 및 물품관리 실태
- 각종 공사 추진 적정여부
- 각종 민원처리의 관련법규 및 절차 이행여부
- 농지관리 등 산업경제행정 전반
-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실태
- 민방위, 주민등록, 인감, 확정일자 등 기초 행정분야 전반 등

## II | 감사결과

- 지적건수:** 17건(처분요구 10건, 현지조치 7건)

(단위:건, 천원)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환급	계	징계	주의
17	6	11	* , ***	* , ***	-	16		16

## III

## 처분요구사항

일련 번호	건 명	요 구 내 용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	<b>총 10건 (시정 5건, 주의 5건)</b>		
1	통합발주가능공사 분할발주 등 계약업무 추진 소홀	주의	-
2	계약업무 추진 소홀(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	시정	-
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소홀처리	주의	-
4	민방위 대원 편성에 따른 임무 통지 소홀	주의	-
5	세외수입 부과처리 소홀	주의	-
6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	주의	-
7	물품 구매 계약 부적정	시정	-
8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리 부적정	시정	-
9	합판거푸집 설계서 작성 및 정산 업무 소홀	시정	(회수)*,***천 원
10	공사대금 지급 시 보험료 등 정산 업무 소홀	시정	(회수) ***천 원

## IV

## 현지조치사항

일련 번호	건 명	조 치 내 용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
계	<b>총 7건 (시정 1건, 주의 6건)</b>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 소홀	현지주의	-
2	세입세출외현금 증빙서류 관리 부적정	현지주의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업무 소홀	현지주의	-
4	시설공사 일상감사 미이행	현지주의	-
5	◇◇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예정가격 작성업무 소홀	현지주의	-
6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현지주의	-
7	전자수입인지 소인 업무 처리 소홀	현지시정	-

## □ 처분요구사항

제 목	<b>1. 통합발주가능공사 분할발주 등 계약업무 추진 소홀</b>
위법부당 내 용	「20xx년 세출예산 재배정통보서 중 마을안길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재배정 예산임. (◀◀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천 원) 「◀◀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재배정된 예산을 수의 1인 견적으로 1) ◇◇마을 마을안길 진입도로 개선사업 2) ◀◀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로 구분하여 (주) ♠♠♠♠과 20xx.xxxx. **,**천원, 20xx.xx.xx. **,**천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 항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a href="#">행정상『주의』</a> , <a href="#">신분상『주의』</a>

제 목	<b>2. 계약업무 추진 소홀(하자보수보증금 미징구)</b>
위법부당 내 용	“20xx년 ♥♥♥♥♥ 사업”외 x건의 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지급)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경공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사업 하자보수보증금률로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하자보수보증금률) 제5항에 따라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로 대체 징구하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 항	하자보수보증금을 해당사업 하자보수보증금률로 산정하여 납부도록 조치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a href="#">행정상『시정』</a> , <a href="#">신분상『주의』</a>

제 목	<b>3.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 소홀처리</b>
위법부당 내 용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면서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없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20xx년에 ♥♥♥ 외 x건, 20xx년에 ♥♥♥ 외 x건 대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 받았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 노동력과 농업 기계·장비의 확보방안이 포함된 필수기재 사항을 농업경영계획서에 작성하여야하나 20xx년에는 xx건, 20xx년에는 xx건을 규정된 내용의 기재없이 처리하여 증명서 발급업무를 소홀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 항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a href="#">행정상『주의』</a> , <a href="#">신분상『주의』</a>

<b>제 목</b>	<b>4. 민방위 대원 편성에 따른 임무 통지 소홀</b>
<b>위법부당 내 용</b>	20xx년도 xx명, 20xx년도 xx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민방위대에 편성된 모든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 서식(민방위대 편성 사실·소속 및 임무통지서)에 의하여 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20xx년도 및 20xx년도에 통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b>처분요구 사 항</b>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b>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b>

<b>제 목</b>	<b>5. 세외수입 부과처리 소홀</b>
<b>위법부당 내 용</b>	2019.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x건 **천 원, 가족 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x건 **천 원을 부과함에 있어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내 과태료대장에 감경자료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징수하여야 하나, 모든 부과건수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과태료대장에 입력·관리하지 않고 부과대장관리에서 직접 입력하여 과태료를 처리하였고,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당사자에게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b>처분요구 사 항</b>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b>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b>

<b>제 목</b>	<b>6.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미수립</b>
<b>위법부당 내 용</b>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20xx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사실이 있다.
<b>처분요구 사 항</b>	관련 규정에 대한 업무연찬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b>행정상『주의』, 신분상『주의』</b>

<b>제 목</b>	<b>7. 물품 구매 계약 부적정</b>
<b>위법부당 내 용</b>	_chunks 공간 조성을 위한 초화류 구입 및 식재를 물품구매 계약함. 발주 내용을 살펴보면 초화류를 구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재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조경공사)가 반영되어야하고, 이러한 전문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계약시에는 예정가격(도급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이라면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시행시 계약상대방이 해당 전문공사(조경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나 확인없이 면허가 없는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 항	계약업무 추진 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기적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a href="#">행정상『시정』, 신분상『주의』</a>
-------------	--

제 목	<b>8. 대형폐기물 수수료 관리 부적정</b>
위법부당 내 용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배출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에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한 후 납부한 영수증을 확인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창구에서 바로 수수료를 수령할 시에는 수입증지로 수입처리를 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하지만 마암면 ♣♣♣♣에서는 창구에서 수수료를 수령하여 수입증지 처리하지 않고 수수료 수령후 사후에 징수결정 및 고지서를 발급하여 대리납부 하고 있어 대형 폐기물 수수료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 항	대형폐기물 수수료 세입처리시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기적 업무연찬을 통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a href="#">행정상『시정』, 신분상『주의』</a>

제 목	<b>9. 합판거푸집 설계서 작성 및 정산 업무 소홀</b>
위법부당 내 용	「●●지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외 x건의 공사에 대해 콘크리트포장 및 석축천단 시공의 설계 내역서 작성 및 공사 시공을 함에 있어 콘크리트 형상을 유지하기 위한 합판거푸집의 설치 수량을 포장면 양측에 반영하였으나, 기존포장, 석축 등의 기존 구조물과 포장면이 접한 쪽은 합판거푸집이 불필요하며, 도급자도 구조물에 접하여 콘크리트포장 시공하였으므로 수량산출서 작성 시 구조물과 접한면의 합판거푸집 수량을 공제하여 공사비를 산출하였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천 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 항	과다 지급한 공사비 *,**천 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a href="#">행정상『시정』, 신분상『주의』</a>

제 목	<b>10. 공사대금 지급 시 보험료 등 정산 업무 소홀</b>
위법부당 내 용	「◆◆지구 배수로 정비공사」(이하 “①”이라고 한다)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이하 “②”이라고 한다), 「소통하는 읍면동 ●●●●사업(통신)」(이하 “③”이라고 한다) 의 경우, 계약 체결 후 내역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①의 경우 **천 원, ②의 경우 ** 천 원을 계상하였고, 같은법 제22조의3에 따라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③의 경우 ***천 원을 계상하였다. 마암면에서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가 의무경비로 포함된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 발급자료 및 보험료 정산내역을 제출받아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정산 조치 없이 ***천 원 예산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사 항	과다 지급한 공사비 ***천 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a href="#">행정상『시정』, 신분상『주의』</a>

## □ 현지조치사항

일련 번호	제 목	내 용	조 치
1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 소홀	지방세 제증명을 발급함에 있어 발급신청서 미제출, 위임자의 위임의사 확인서류 미제출 (신분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등)이 있었음에도 총 x건에 대해 발급한 사실이 있음	현지주의
2	세입세출외현금 증빙 서류 관리 부적정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반환등으로 변동사항이 발생할때에는 당일 지방재정시스템에 수납·반환 등의 내용을 입력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정리(출력)하여 세입세출외현금 통장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출납원, 면장까지 결재를 받아두어야 함에도 규정되지 않은 절차 (세입세출외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로 결재 및 정리)로 서류 관리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지출 증빙서류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현지주의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업무 소홀	총공사금액 4천만원(2020. 7. 1. 이전) 또는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에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및 준공 시 정산 절차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공사원가계산서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현지주의
4	시설공사 일상감사 미이행	20xx.xx.xx. (주)██ 대표 A와 계약한 「██ 소하천 개보수사업」의 경우 당초 설계내역서 추정금액[도급액+관급자재비] **,***천 원으로 20xx.xx.xx. 일상감사를 받고 최초 **,***천 원에 도급계약하여 사업시행하였으나, 주민민원 등의 사유로 20xx.xx.xx. 도급금액 **,***천 원으로 변경계약 시행하였음	현지주의

		해당 건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추정금액 40,000천 원 이상의 일상감사 대상 시설공사로 사업 시행 전 일상감사는 받았으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이 발생하였음에도 감사부서에 사업의 적법성·타당성, 예정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받지 아니한 채 시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5	◇◇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외 예정가격 작성업무 소홀	노후용수로 교체를 위하여 기존 U형플룸관 해체 시 플룸관 설치품의 50%를 수로관해체 단가로 산출하여 내역 적용하였으나,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르면 U형플룸관을 유용할 목적으로 해체할 경우 해체공은 U형플룸관 설치의 50%를 계상한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 플룸관의 유용이 아닌 폐기물처리를 위한 플룸관 철거시에는 작업의 주의도, 작업성 등을 고려한 단가산출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해체품을 일률적으로 설치품의 50%로 계상하여 예정가격이 과다산정(설치품의 20% 단가 적용시) 되어 예산 낭비 결과를 초래하는 등 예정가격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현지주의
6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반기별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점검표를 작성 및 비치를 하지 않는 등 수급자의 생활실태 및 급여 사용실태 확인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현지주의
7	전자수입인지 업무 처리 소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따라 첨부한 종이 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소인을 누락(x건)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현지시정